

국고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19. 10.
개 정 2021. 1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우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각종 재정(국고)지원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고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관리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국고)지원사업별 예산 및 사업간 중복 방지를 통한 대학 재정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심의
2. 재정(국고)지원사업 계획의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정합성 심의
3. 재정(국고)지원사업 계획 최종 심의
4. 재정(국고)지원사업별 프로그램의 중복성 심의
5. 재정(국고)지원사업별 우수프로그램의 확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검토
6. 기타 재정(국고)지원사업별 효과 창출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업에 관한 사항 검토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명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임기를 정하여 임명한다.

제4조(회의) ① 회의 소집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한다.

1. 국고사업조정위원회
 - 가. 재정(국고)지원사업별 연간 계획
 - 나. 재정(국고)지원사업별 예산 검토
 - 다. 재정(국고)지원사업간 중복 투자 검토
2. 국고사업자체평가위원회
 - 가. 재정(국고)지원사업별 자체평가 검토
 - 나. 차년도 사업 계획 개선 반영 검토

② 국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위해 국고사업자체평가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위원을 2인 이상 위촉한다.

제6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